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1847
-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17일  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윤기섭 의원 외 27명

나. 제안일자 : 2024년 05월 27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05월 30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2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24년 6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윤기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공공자전거“따릉이”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출·퇴근 시간대 자전거

거 쏠림현상 발생하고 있으나 배송인력 충원을 통한 인위적 재배치는 운영수지 관점에서 배송인력 무한정 확대 불가, 업무 효율에도 한계 존재함

- 재배치 문제해결은 부분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
- 과다·과소 대여소에서 따릉이 대여·반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시민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화가 필요

## 나. 주요골자

- 가.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)
- 나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을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제1부터3호)
- 다. 시장이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6. 4. ~ 2024. 6. 8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<sup>1)</sup>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(별도의견 없음)

---

1) 보행자전거과-8235호(2024.6.11.) “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”

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시장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“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”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‘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’와 ‘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’를 인센티브 제공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
-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공공자전거(이하 “따릉이”)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이용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환승하는 공공자전거 정기권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 인센티브를 제공<sup>2)</sup>하고 있으며

2) 보행자전거과-13625(2015.10.14.)호 “서울자전거 대중교통 환승정보 연계 협약 체결보고”

- 적립 대상 : 1년 정기권 이용자 중 버스, 지하철 30분 이내 환승자

- 적립 내용 : 1회 100원, 1일 최대 200원, 1년 최대 15,000원 적립 가능

정기권 총 이용자 중 약 3~5% 이용자가 연간 약 30백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

※ 따릉이-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내역

구 분	2021년	2022년	2023년
정기권이용건수	7,935천건	10,701천건	14,302천건
적립건수	384천건	426천건	468천건
적립금액	38.4백만원	42.6백만원	46.8백만원
실사용금액 <sup>주)</sup>	27백만원	30백만원	33백만원
적립률	4.8%	3.9%	3.3%

주) 실 사용금액 : 적립금액 중 이용권 구매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

- 또한,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, 주말 오후 등 따릉이 이용수요가 높은 자전거 대여소의 혼잡완화를 위한 ‘따릉이 시민참여 재배치 시범사업(’23.7월~)3)’ 시행을 통해 따릉이 반납 편의 제공, 보행불편 해소, 재배치 요원 운영비(159백만원)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확대 시행을 계획중에 있음
- 동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확대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3) 보행자전거과-544(2024.1.9)호 “따릉이 시민참여 재배치 시범사업 결과보고”

- 안 제15조제4항은 동조 제3항에 따라 인센티브제도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된다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윤기섭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4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윤기섭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 
김성준, 김영철, 김원중,  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 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 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 
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 
소영철, 유만희, 유정인,  
이봉준, 임규호, 장태용,  
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공공자전거“따릉이”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출 퇴근 시간대 자전거 쏠림현상 발생하고 있으나 배송인력 충원을 통한 인위적 재배치는 운영수지 관점에서 배송인력 무한정 확대 불가, 업무 효율에도 한계 존재함.
- 재배치 문제해결은 부분적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.
- 과다 과소 대여소에서 따릉이 대여 반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시민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화가 필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)
- 나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상을 규정함(안 제15조제3항제1부터3호)



다. 시장이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15조제4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부여”를 “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에게 마일리지”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
2. 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
3. 그 밖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- ④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<u>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<u>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지하철·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</u></li> <li>2. <u>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</u></li> <li>3. <u>그 밖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</u></li> </ol> <p>④ 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
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) 제3항을 개정함에 따라 공공자전거 대여소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 등에 추가로 제공 되는 마일리지만큼 요금 수입 감소가 발생함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# 가. 대상

-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)

##### 나. 전제

- 마일리지는 1회 100원, 일 최대 400원, 월 최대 5,000원 지급 가정
  - 2023년 하반기 공공자전거 대여소 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를 위해 '티머니 GO'와 협업하여 수행한 시민참여 재배치 시범사업 결과를 기준으로 분석
  - 적립한 마일리지는 따릉이 이용권 구매에 전액 사용한다고 가정
- 시민참여 재배치 시범사업 '티머니 GO' 점유율 대비 마일리지 지급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따릉이 플랫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예상 지급액 산출
  - 전체 따릉이 대여 건수 중 '티머니 GO' 점유율은 7~12월 중 최저치인 12%로 산정
  - 시민참여 재배치 대상 대여소를 평일 출퇴근 220개소, 주말 오후 110개소로 전제
  - 시민참여 재배치 참여율은 날씨, 기온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
- 비용은 2025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# 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##### 라. 방법

-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제공자료 활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686,913천원(연평균 137,383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수입	○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)	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686,913
	소계(b)	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686,913
□ 총 비용(a-b)			137,383	137,383	137,383	137,383	137,383	686,913

※ 서울시 보행자전거와 제공자료

4. 덧붙이는 의견 :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규모 변동, 그 밖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추가될 경우 요금 수입 감소액이 달라질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 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  
 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중헌  
 추 계 분 석 관      김지혜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☎ 02-2180-7953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) 제3항을 개정함에 따라 공공자전거 대여소간 자전거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자 등에 추가로 제공되는 마일리지만큼 요금 수입 감소가 발생함

2. 세부추계내역

○ 총비용(합계) ≙ 686,913천원(연평균 137,383천원)  
 = 137,383천원 × 5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수입	○제15조(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지원)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686,913
	소계(b)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137,383	△686,913
□총 비용(a-b)		137,383	137,383	137,383	137,383	137,383	686,913

※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제공자료

○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요금 수입 감면액 추계(평일 220개소, 주말 110개소 기준)

- 점유율이 12%인 '티머니 GO'에서 발생하는 1년간 마일리지 지급액(16,485천원)을 점유율 100%인 따릉이로 확대했을 경우 감면액(137,383천원)은 약 8.3배 증가된 수준으로 예상됨

따릉이 확대 시 지급액(점유율 100%)	티머니 GO 시범사업(점유율 12%)	
산출식 : 1년간 티머니 마일리지 예상 지급액 × 100 ÷ 12	티머니 마일리지 지급액(7~10월)	1년간 티머니 마일리지 예상 지급액
137,382,500원	5,495,300원	16,485,900원